
2020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인제대학교
INJE UNIVERSITY

차 례 | CONTENTS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 • • • • • • •	1
전형일정	• • • • • • • •	2
지원자격	• • • • • • • •	3
지원자격 인정기준	• • • • • • • •	4
2021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공통 지원자격	• • • • • • • •	7
제출서류	• • • • • • • •	8
전형방법 및 면접고사	• • • • • • • •	10
선발방법	• • • • • • • •	11
전형료 및 수수료	• • • • • • • •	11
지원자 유의사항	• • • • • • • •	12
복수지원 관련 사항	• • • • • • • •	12
이중등록 금지	• • • • • • • •	1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 • • • • • •	13
각종서식	• • • • • • • •	14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1. 재외국민 : 입학정원의 2%이내(43명 이내)

2. 전 교육과정 이수자 및 북한이탈주민 : 입학정원 제한 없이 모집

단과 대학	모집단위	모집 인원	단과 대학	모집단위	모집 인원
의과 대학	의예과 의학교육인증(6년)	4	공과 대학	산업경영공학과 ABEEK LINC+ PRIME	5
	간호학과 교직 간호교육인증(5년)	8		실내건축학과 LINC+ PRIME	4
문리과 대학	의생명화학학과 LINC+	3		전자IT기계자동차공학부 ABEEK LINC+ PRIME	18
	국제어문학부 중국어언어문화 교직 LINC+ 일어일본 교직 LINC+ 영어영문	8		창의전자공학 교직 정보통신공학 KAI 첨단기계공학 교직 미래자동차공학	
	인문문화융합학부 LINC+	8		토목도시공학부 ABEEK LINC+	5
사회 과학 대학	경영학부 GTEP LINC+	16	소프트 웨어 대학	환경공학과 ABEEK LINC+	3
	공공인재학부 LINC+	8		드론IoT시뮬레이션학부 LINC+	4
	보건행정학과 LINC+	3	보건 융합 대학	컴퓨터공학 ABEEK KAI LINC+	7
	사회복지학과 LINC+	3		컴퓨터공학 교직 정보보호 인공지능	
	상담심리치료학과 LINC+	3		물리치료학과 LINC+	4
	소비자·가족학과 LINC+	3		보건안전공학과 LINC+ PRIME	4
	신문방송학과 LINC+	3		의용공학부 LINC+ PRIME	8
	통계학과 LINC+	3		의용전자 의용소재역학	
공과 대학	건축학과 LINC+	4		임상병리학과 LINC+	4
	디자인엔지니어링학과 LINC+ PRIME	4		작업치료학과 LINC+	3
	멀티미디어학부 LINC+ PRIME	6	BNIT 융합 대학	나노융합공학부 ABEEK LINC+ PRIME	10
	미래에너지공학과 LINC+ PRIME	4		나노소재·반도체·바이오융합공학 나노바이오공학 나노소재공학 나노반도체공학	
				식품생명과학부 LINC+	5
				식품공학 식품영양학 교직	
				바이오테크놀로지학부 LINC+ PRIME	7
				바이오향학 바이오공학	
				제약공학과 LINC+ PRIME	8
				헬스케어IT학과 LINC+ PRIME	5
			계	43명 이내	

- 총 모집인원은 당해학년 전체 입학정원의 2%이내,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이내에서 선발함(단, 의예과는 5%이내)
- 위 모집인원은 각 모집단위별 최대모집인원이며 지원자의 학력수준 등에 따라 그 이하 인원으로 선발할 수 있음
- 지원자별 수시모집 전체 지원 횟수는 6회로 제한되며, 이를 초과한 원서접수는 취소됨

- **교직** 표한 모집단위는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부(과)로 입학하여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되어 재학 중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졸업 후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ABEEK** 표한 산업경영공학과, 전자IT기계자동차공학부, 토목도시공학부, 컴퓨터공학부, 나노융합공학부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에서 실시하는 공학교육인증제(단일인증제-2016학번 신입생부터 적용)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환경공학과는 인증평가 준비 중입니다.(2021년에 인증평가 예정)
- **PRIME** 표한 모집단위는 교육부 지원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후속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LINC+** 표한 모집단위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의학교육인증(6년)** 표한 모집단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KIMEE) 의학교육평가인증(6년, 2015. 3.~2021. 2.)
- **간호교육인증(5년)** 표한 모집단위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KABONE) 간호교육평가인증(5년, 2015. 6.~2020. 6.)
- **GTEP** 표한 모집단위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GTEP)을 주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이 중소기업의 수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무역실무교육을 수행하는 국책사업)
- **KAI** 표한 모집단위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정보통신공학 트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BNIT(Bio Nano Information Technology) : 바이오 나노 정보 기술의 약자입니다.

전형일정

구분		일시	비고
원서 접수		2019. 7. 4.(목) 09:00 ~ 7. 10.(수) 18:00	■ 추후공지
온라인서식입력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		2019. 7. 4.(목) 09:00 ~ 7. 10.(수) 24:00	■ 일괄 출력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음 ■ 정해진 입력기간 이후에는 수정일체 불가
서류 제출 (방문 또는 우편접수)		2019. 7. 4.(목) 09:00 ~ 7. 17.(수) 17:00	■ 우편/택배/ 방문제출(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의예과 1단계 합격자 발표 및 면접고사 일시 안내		2019. 10. 11.(금) 13:00	■ 입학홈페이지 (http://iphak.inje.ac.kr)
면접고사		2019. 10. 30.(수)	■ 김해캠퍼스
합격자	발표	2019. 11. 6.(수) 13:00	■ 입학홈페이지(http://iphak.inje.ac.kr) : 합격증 및 등록금 고지서 출력
	등록확인 예치금 납부	2019. 12. 11.(수) ~ 12. 13.(금)	
추가 합격자	발표	2019. 12. 16.(월) ~ 12. 19.(목) 21:00	
	등록확인 예치금 납부	2019. 12. 17.(화) ~ 12. 20.(금)	
잔여등록금 납부		2020. 2. 5.(수) ~ 2. 7.(금) 16:00	

- 원서접수는 원서접수 대행업체(추후공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실시합니다.
※ 원서접수 후 반드시 원서접수 여부를 본인이 지원한 원서접수 대행업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지원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방문 또는 우편이나 택배 등을 이용하여 2019. 7. 17.(수) 17:00까지 본교 김해캠퍼스 입학처에 도착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방문제출이 불가능)
※ 원서접수 대행업체 홈페이지에서 '발송용 봉투표지'를 출력한 후 제출서류 겹봉에 부착하여 발송하세요.
※ 제출서류가 도착하지 않거나 미비하여 자격 확인이 안되는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됩니다.
-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해 보충 서류를 별도로 요구할 수 있으며, 2019. 9. 11.(수) 17:00까지 도착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 주소 : 50834 경남 김해시 인제로 197 인제대학교 입학처 ☎ 055-320-3700~2)
- 제출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한 경우 최종 등록 후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원자격

1. 재외국민(입학정원 2%이내 모집)

공통 자격

국내·외에서 초·중·고교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중 아래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 외국소재 고교 졸업(예정)자
-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 고교로 전학하여 국내 고교를 졸업(예정)한 자

지원 대상	지원 자격	최저 해외 재학 거주 체류기간(단위:년)							
		학생			보호자			배우자	
		재학	거주	체류	근무	거주	체류	거주	체류
영주 교포 자녀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영주한 교포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교과정 또는 고교과정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2	2	1	-	2	1	2	1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공무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교과정 또는 고교과정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2	2	1	2	2	1	-	-
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상사 직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교과정 또는 고교과정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2	2	1	2	2	1	-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2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교과정 또는 고교과정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2	2	1	2	2	1	-	-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교과정 또는 고교과정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2	2	1	2	2	1	-	-
현지법인· 자영업자의 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현지법인 또는 자영업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교과정 또는 고교과정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 부모 및 학생 모두 2년 이상 외국에서 거주하여야 함	2	2	1	2	2	1	2	1
유학·연수자의 자녀	유학 또는 연수를 목적으로 외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거나 거주하고 귀국한 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교과정 또는 고교과정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 부모 및 학생 모두 2년 이상 외국에서 거주하여야 함	2	2	1	2	2	1	2	1
기타 재외국민 자녀	기타 적법한 사유(절차)로 외국에 5년 이상 거주(근무) 하거나 거주하고 귀국한 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을 2년 이상 이수하고 귀국한 자 ※ 부 또는 모 그리고 학생이 5년 이상 외국에서 거주하여야 함 ※ 거주기간(5년) 산정은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 내로 제한 함	2	5	2.5	-	5	2.5	-	-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외국국적 취득 후 외국에서 2년 이상의 고교과정을 이수한 외국인 ※ 부·모 국적 불문(복수 국적자 제외)	2	2	1	-	-	-	-	-

2. 전 교육과정 이수자 · 북한이탈주민(입학정원 제한 없이 모집)

공통 자격

외국에서 초 · 중 · 고교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지원 대상	지원 자격
외국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자	1. 외국에서 초 · 중 · 고등학교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2. 외국에서 초 · 중 · 고등학교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 1,2의 지원 자격을 만족하는 자 중에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자 ※ 단, 의예과는 TOEFL 550, CBT 210, iBT 80, IELTS 5.5, TEPS 550점 이상 취득자로 대체 가능 ※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 부, 모, 학생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 특별전형'에 지원바람 (담당부서 : 국제교류처 ☎ 055.320.3536)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 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의해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된 자 ※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반드시 '학력인정증명서'가 있어야 하며,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로 대체할 수 없음

지원자격 인정기준

1. 해외 근무자의 자격 인정 범위

구분	지원 자격 범위 및 유의사항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상사직원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2.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3.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설치인증 · 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 · 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점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4.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 · 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5. 정부파견의사, 언론기관특파원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1. 외국정부 : 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 (단,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2. 국제기구 : 정부 간의 국제조약 · 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 (단, 기타 비정부간 또는 국제단체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
현지 법인	외국 현지법인에서 2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자
자영업자	외국에서 자영업 허가를 얻어 2년 이상 영업 중이거나 영업하고 귀국한 자

※ 외국으로 상근하는 경우에 국한되며, 단기근무형식의 교육, 연수, 출장 등의 목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자는 제외

2. 지원자격 심사 및 인정기준

구분	유의사항(주요사항)	
입학허용 기간	제한 없음	
외국인의 범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복수 국적자 · 무국적자는 외국인에서 제외	
재외국민의 범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영주 · 거주 · 체류하는 자	
고등학교 졸업 자격인정 기준시점	2020년 2월 29일(토)까지 졸업하여야 함(본교 입학하는 날이 속하는 학기개시 전일) 다만 해당국가의 학제상 학년도와 학기 개시일이 우리나라보다 1개월이 늦은 국가(일본 등)는 1개월의 재학 예정 기간 범위 내에서 외국학교 재학 기간만을 예외적으로 초과 인정	
해외 재학 · 근무 · 거주 · 체류 · 영주기간 산정기준	1. 지원자의 중 · 고등학교 재학기간(외국학교 재학 인정기간)에 보호자가 체류 · 거주 · 근무한 기간	
	재학기간	부모의 근무 또는 영주기간과 중첩된 기간 내에 해외에 재학한 기간 (방학 및 휴일에 국내에서 임시로 체류한 기간은 재학기간으로 인정)
	근무기간	증명서상(재직 및 경력증명서) 해외근무 발령일부터 귀임 발령일까지의 기간과 출입국증명서 에 표시된 거주기간 중 중첩된 기간 ※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국한(교육, 연수, 출장 등의 단기근무자 제외)
	거주기간	재학 및 근무를 위해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으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상에 기재된 기간과 출입국증명서에 표시된 거주기간 중 중첩된 기간
	체류기간	출입국증명서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 체류일수를 제외한 기간 ※ 지원자격별 근무, 거주 및 재학기간의 1/2을 자격요건으로 함
	영주기간	영주권을 발급 받은 후 해외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
	2. 지원자의 재학기간과 중첩된 기간만 인정	
3. 휴직기간은 지원 자격 취득기간에서 제외		
4. 동일 학년(학기) 중복하여 이수한 경우 중복된 수학기간은 지원 자격 취득을 위한 거주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해외거주 · 근무 및 체류기간 산정방법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근무 확인서류, 재학기간 증명서류를 종합 검토, 판단하여 기간을 산정	
해외학교 교육과정 및 재학기간 인정기준	1. 부모의 근무(거주)국에 소재한 학교에서 재학한 경우만 인정 (다만, 부모 근무(거주)국의 지역, 종교, 이데올로기(공산권)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모의 근무국이 아닌 제3국 소재학교는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심사과정을 거쳐 판단) [서식6] 제3국 수학 사유서 작성 2. 초 · 중 · 고교 교육과정에 재학한 기간만 인정함 3. 유치(아)원, 국내소재 외국인학교, 검정고시, 초중고 교육과정 중의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 등은 정규 교육과정으로 인정하지 않음 4. 부정 · 편법 ·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초 · 중 · 고교 수학기간은 우리나라 학제(12년제)를 기준으로 심사 5. 해외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일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까지 해외재학 기간으로 인정 6. 해당 학년/학기를 정상적으로 재학하고 소정의 학점 또는 성적을 취득한 경우에만 재학기간으로 인정 7. 학년(Academic Year)기준이며, 수업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1년을 재학기간으로 인정 (해당국의 학제 등을 고려하여 3학기제 또는 쿼터제인 경우 3학기 또는 4학기 이수를 1년 재학기간으로 인정함) 8. ‘외국의 학교에서 2년(4학기)이상 재학’ 이란 외국의 고등학교과정(2년)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한 중 · 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이상 재학한 기간 을 말하며 외국학교 수학을 위해 출국한 시점부터 귀국한 시점까지 2년이 넘을 경우에 한하여 인정 9. 출 · 입국이 빈번하여 2년 이상 재학하지 아니한 경우는 고등학교 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통산 3년 이상의 중 · 고교 과정에 재학했을 때 2년 이상 재학한 것으로 간주	

**해외학교
교육과정 및
재학기간
인정기준**
10. 학교 간 동일학년(학기) 중복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가.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1개 학기 중복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나. 누락된 학기는 한 학기에 한하여 중복 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다. 동일 학년(학기)를 중복하여 이수한 경우 중복된 수학기간은 지원 자격 취득을 위한 거주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11. 단 중복학기 지원 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학이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예시) 중복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충족사례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 기간	D	D	D	D					D	D	D	D	D				D	D	D					
				A	A	A	A	누락					A	A	A	A	누락				누락	A	A	A

중복학기[G2-2로G2-4 대체 가능] 중복학기[G7-1로G9-1 대체 가능] G11-1학제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

12. 외국에서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제별 지원 자격 인정 여부

가. 해외 1개국 내에서 학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자

- ①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하며, 방학, 해외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 ② 12년 미만 학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초·중·고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학력을 인정함

나. 학제가 다른 해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학년제	인정 여부 및 인정 조건	비고
10학년 이하	미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당해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이수로 인정
11학년제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12학년제		
13학년 이상	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 : 해당국 학년제의 총 이수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연수

- ① 학제가 다른 2개 학교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고교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중복수학 또는 학기 결손의 경우 총 1학기(6개월)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 ②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등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2021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공통 지원자격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29조 제2항 제2호의 재외국민 및 외국인(정원의 2% 선발)전형의 지원자격을 표준화함.

구분	2021학년도 이후	2020학년도 까지
학생 이수기간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 · 고교 3년 이상으로 표준화	2년 또는 3년 이상 등 대학 자율 시행
체류기간	학 생 : 학생 이수 기간의 3/4 이상 보호자 : 학생 이수 기간의 2/3 이상	대학자율 설정
해외근무자 재직기간	역년으로 통상 3년(1,095일) 이상의 해외근무/사업/영업	대학자율 설정

※ 체류기간 산정을 위한 1개년의 기준은 학기 개시일 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임

※ 부정 · 편법 ·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 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을 충족해야 함)

2. 지원 자격에 따른 부모 및 학생의 세부 지원자격

※ 해외발급 서류(아포스티유 확인서, 영사확인 서류 등)도 반드시 원서접수 시점(서류제출 기한 내)에 제출받아야 함

구분	내용
해외근무자의 정의	역년으로 통상 3년(1,095일) 이상의 해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해외에 체류한 자
해외근무자 자녀의 정의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3년(1,095일)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기간에 진행되는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해외재학기간의 정의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해외체류일수 조건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로부터 다음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함 ■ 학생이 학기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365일)되는 일까지의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제출서류

1. 공통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본교 입학원서(인터넷 입력)	원서접수 대행업체(추후공지)
2	수학기간기록표[서식1]	
3	부모(보호자) 외국 체류기간 기록표[서식2]	외국인 및 입학정원 제한 없는 모집은 제외
4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서식3](인터넷 입력)	원서접수 대행업체(추후공지)
5	학력조회 자료[서식4]	외국에서 재학한 모든 초·중·고 학력사항 기재
6	학력조회동의서[서식5]	외국에서 재학한 모든 학교에 대해 각각 작성
7	제3국 수학 사유서[서식6]	해당자에 한함
8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자는 추후 졸업증명서 제출
9	초·중·고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 (북한이탈주민 제외)	국내 수학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10	초·중·고교 전 과정 재학(사실)증명서	재학기간 명시, 국외 학교에 한함
11	School Profile 및 School Calender[선택 : 제출 권장]	교육과정, 학제, 학사일정(학기시작 및 종료일/방학시작 및 종료일) 확인 가능해야 함

- ※ 해외학교에서 발급하는 8,9,10 서류는 반드시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서류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
- ※ 제출서류는 제출서류 목록에 기재된 번호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해야 함
- ※ 외국어(영어 제외)로 작성된 서류는 한국어로 작성된 공증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 서식자료는 컴퓨터로 작성 후 출력하여 제출해야 함
- ※ 외국학교의 경우 제출서류 중 재학(사실)증명서에는 재학기간(년, 월, 일) 및 재학기간에 따른 학년 및 학기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학사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School Profile 및 School Calender제출 하여야 함(홈페이지 출력물 제출 시 웹사이트 주소가 반드시 표기 되어 있어야 함)

2. 지원자격별 추가 제출서류

지원자격	제출서류
영주 교포자녀	1.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 본인 기준)
	2. 여권 사본(지원자 본인 및 부·모)
	3. 출입국 사실증명서(지원자 본인 및 부·모)
	4. 영주권 사본(지원자 본인 및 부·모) - 취득일 기재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상사직원 자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1.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 본인 기준)
	2. 여권 사본(지원자 본인 및 보호자)
	3. 출입국 사실증명서(지원자 본인 및 보호자)
	4. 재외국민등록부등본(지원자 본인 및 보호자)
	5. 보호자의 재직(경력)증명서(원본제출) : 해외근무 기간 및 경력, 파견지역 기재
	6.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만 해당] 해당 기관장 초청서 또는 추천서
	7. [상사직원 자녀만 해당] 해외직접투자신고서(허가서)또는 해외지사 설치 인증서(외국환 은행 발급)
현지 법인· 자영업자의 자녀	1.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 본인 기준)
	2. 여권 사본(지원자 본인 및 부·모)
	3. 출입국 사실증명서(지원자 본인 및 부·모)
	4. 재외국민등록부등본(지원자 본인 및 부·모)
	5. 보호자의 재직(경력)증명서 : 해외근무 기간 및 경력, 파견지역 기재
	6. [현지법인 근무자 자녀만 해당] 현지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세 납부이력
	7. [자영업자 자녀만 해당] 사업자등록증 및 세금납부증명서(지원자격 기간 내 해당국 세금납부 증명)

* 출입국사실증명서인 경우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지원 자격	제출서류
유학 · 연수자의 자녀	1.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 본인 기준) 2. 여권 사본(지원자 본인 및 부 · 모) 3. 출입국 사실증명서(지원자 본인 및 부 · 모) 4. 재외국민등록부등본(지원자 본인 및 부 · 모) 5. 보호자 유학연수사실증명서(재직증명서, 연수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기타 재외국민 자녀	1.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 본인 기준) 2. 여권 사본(지원자 본인 및 보호자) 3. 출입국 사실증명서(지원자 본인 및 보호자) 4. 재외국민등록부등본(지원자 본인 및 보호자)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1. 여권 사본(지원자 본인) 2. 출입국 사실증명서(지원자 본인) 3. 외국국적증명서(여권사본 및 시민권사본(취득일 기재)) 4. 국적상실 확인 증명서(주민등록말소 등본 또는 제적등본) 5. 외국인등록증 사본(지원자 본인) 6. 한국어능력 입증관련 서류 (한국어 능력시험 성적증명서(TOPIK) 3급 이상) : 단, 의예과는 TOEFL 550, CBT 210, iBT 80, IELTS 5.5, TEPS 550점 이상 성적증명서로 대체가능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 결혼이주민	1. 여권 사본(지원자 본인) 2. 출입국 사실증명서(지원자 본인) 3. [결혼이주민] 국적취득확인서 또는 귀화 허가 통지서 4. [결혼이주민]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지원자 본인 기준) 5. 한국어능력 입증관련 서류 (한국어 능력시험 성적증명서(TOPIK) 3급 이상) : 단, 의예과는 TOEFL 550, CBT 210, iBT 80, IELTS 5.5, TEPS 550점 이상 성적증명서로 대체가능
북한이탈주민	1.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시 · 군 · 구청 발급) 2. 북한이탈주민 학력인정증명서(시도교육청 발급) : 초 · 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의해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시 · 도 교육청에서 신청 및 발급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로 대체할 수 없음

* 출입국사실증명서인 경우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3. 활동 증빙자료(제출가능자에 한해 제출)

연번	선택 제출서류
1	해당국가 대학입학시험 성적증명서 또는 학력증명서 : 高等学校招生考试(高考), SAT, ACT, AP, A-Level, International Baccalaureate(IB) 등
2	외국어능력시험(TOEFL/TOEIC/TEPS 등) 성적표 (2017년 7월 17일 이후 취득한 경우만 인정함)
3	각종 자격증, 수상실적, 봉사활동 실적 및 기타 활동 실적 등

* 1, 2번 증명서 상단에 사용자이름(User Name)과 비밀번호(Password) 기재요

* 의예과 지원자인 경우는 서류심사가 있으며 그 외 모집단위는 서류심사가 별도로 없음

* 지원자격별 추가 제출서류의 다음순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도록 함

4.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원본서류 제출

: 구비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발급기관이나 본교 입학처에서 원본대조필 하여야 하며, 사본 제출자는 최종 합격 후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력·재직증명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

나. 공증서류 첨부 : 외국어(영어 제외)로 작성된 서류는 한국어로 작성된 공증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제출서류 정리 순서 : 공통서류, 추가서류, 활동 증빙자료의 각 연번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해외발급서류는 반드시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서류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외에서 발행한 각종 공문서 및 공증문서(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보호자 경력증명서, 보호자 법인 등록증, 보호자 사업자등록증명서, 보호자 개인소득세 납부 영수증 등)

단, 교육부 인가 재외 한국학교 발급 서류의 경우 학교장 직인으로 갈음함

마. 최종합격자 중 국외고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고교 성적증명서(졸업학기포함), 졸업증명서(졸업장)**에 대해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출입국사실증명서(2020년 2월 이후 발급)와 함께 2020. 3. 13.(금)(일본 등 3월 졸업자는 2020. 4. 1.(수)까지 입학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국내고교 졸업예정자, 국내외 기 졸업자는 제출 불필요)

바. 지원자격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별도로 요구할 수 있으며, 2019. 9. 11.(수) 17:00까지 도착하여야 합니다.

사. 모든 서류는 서류 제출 기간 내에 도착분에 한하며, 이후 도착된 서류는 접수 처리하지 않습니다.

아. 재직(경력)증명서상 해외파견(근무)기간이 연월일까지 명시되어야 하며, 재직(경력)증명서에 기재된 파견국 법인(지사/공장)명은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에 나오는 법인(지사/공장)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해외직접투자신고서(허가서)또는 해외지사 설치 인증서 사본은 반드시 본사나 외국환은행의 원본대조필이 있어야 하며, 복사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는 파견(근무)기간 이전에 수리신고된 것이어야 합니다.

차. 세금납부사실증명서는 공공기관 발급서류만 인정되며 비과세사실증명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카. 법인세 납부이력 대신 개인세금 납부 실적을 제출할 경우 반드시 회사 명칭이 표기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부모가 이혼, 사망한 경우 또는 개명하였을 경우에는 해당입증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반드시 학력인정증명서가 있어야 하며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학력인정증명서(사도 교육청 발급)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 12년 이상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을 인정한 것으로 사·도교육청에서 신청 및 발급

하. 제출된 입학원서(서류 포함)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전형방법 및 면접고사

구 분	전형요소	비고
전체모집단위 (의예과 제외)	면접고사 100%	■ 기본소양, 적성, 인성, 의사표현능력 등 종합적 평가
의예과	1단계 서류심사 (5배수 내외)	■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 전 학년 성적증명서, 수상실적, 자격증, 외국어 능력 시험성적표, 봉사활동, 기타 제출서류 등을 포함한 제반서류심사
	2단계 면접고사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심층면접 실시 : 인성 · 면접태도 · 표현력 · 특기사항 · 전공적성 · 수학능력 등을 종합 평가 ■ 지성과 인성으로 구성 1. 지성(知性)은 구술테스트 방식으로 진행 : 범위는 생명과학 I, 생명과학 II, 화학 I, 화학 II(국내 교과과정 기준) 2. 인성(人性)은 다중미니면접(MMI 면접) 방식으로 진행 : 수험생은 면접 시작 2분전에 제시문과 질문을 읽고 자기의 생각을 정리한 후 8분간 대화를 통해 면접관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

선발방법

1.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자격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지원 자격 적격자에 한하여 면접고사를 실시합니다.
(단, 의예과는 1단계 서류심사 있음)
2. 모집단위별로 지원자 중 성적순으로 선발합니다.
3. 제출서류 미비자, 지원 자격 미달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4. 면접고사에 결시한 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5. **본 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수학능력이 없다고 판정될 경우 모집인원 이하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6. 동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해당자의 동점자 처리 기준은 본 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합니다.
7. 최종합격자라도 제출한 서류 등에서 추후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입학 취소를 합니다.
8.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 이후라도 입학 취소 및 퇴교됩니다.
9.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릅니다.

전형료 및 수수료

1. 모집단위별 전형료

구분	일반전형료(원)	면접고사료(원)	계(원)
전체모집단위(의학과 제외)	20,000	30,000	50,000
의학과	50,000	30,000	80,000

2. 인터넷 접수 수수료 : 본교 부담 5,000원

3. 전형료 반환

- 가. 의예과 1단계 불합격자 : 면접고사료 30,000원 반환
- 나. 천재지변 · 질병 · 기타 사고 등 지원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면접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단순 결시자 제외)
: 면접고사료 30,000원 반환
- 다. 지원 자격 미달자 : 수수료 5,000원을 제외한 전액 반환

4. 전형료 비례 환불 절차

- 가. 본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 4 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 · 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할 경우 2020년 4월 30일까지 지원자가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할 예정입니다.
- 나. 입학전형료 반환 방법은 인터넷원서 접수 시 입력한 금융기관 환불계좌로 이체됩니다.
- 다. 반환절차에 소요되는 비용(금융기관 전산망 이용에 드는 비용 등)이 발생될 경우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예정이며,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라. 반환되는 면접고사료는 원서작성 시 입력한 환불계좌로 입금되며, 환불계좌 입력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마. 원서 접수 후 계좌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입학처로 연락하여 수정해야 합니다.

※ **일단 납부된 전형료는 불합격처리 되더라도 일절 반환되지 않습니다.**

지원자 유의사항

- 원서접수는 원서접수 대행업체(추후공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을 실시하며, 서류제출은 방문 또는 우편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는 2019. 7. 17.(수) 17:00 까지 본교 김해캠퍼스 입학처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 주소 : 50834 경남 김해시 인제로 197 인제대학교 입학처(055-320-3700~2)
- 제출서류의 지연도착, 미비, 주소불명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사유여하를 막론하고 지원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입학원서 기재내용은 반드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기재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에 따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지원자 및 보호자의 주소, 전화번호는 전형기간 중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한 곳(국내)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전형기간 중 연락처의 변동이 있을 시 반드시 본 대학교 김해캠퍼스 입학처에 변경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본교에 재학 중인 자라도 지원방법상 금지조항(이중등록 등) 위반 또는 서류상의 결격사유 등이 발견될 경우 즉시 입학(취소/퇴교 처리)합니다.
- 전형기간 중 수험생에게 알리는 공지사항이나 합격자 발표 등은 개별 통지하지 않고 본교 입학홈페이지 입학공지에 공고합니다.
- 제출된 입학원서(서류 포함)와 결재 완료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면접고사 시 원서를 접수한 사이트에서 수험표를 출력하여 소지하여야 합니다. 미지참한 경우에는 면접당일 면접대기실에서 임시 수험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 합격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납입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연락두절로 인하여 합격(추가합격 포함)의 기회를 상실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 및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 수시모집 합격자의 경우 예치금 납부기간 내에 등록확인예치금(300,000원)을 우선 납부하고 잔여 금액은 추후 등록기간에 추가 납부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입학성적에 관한 사항은 일절 공개하지 않습니다.
-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입학 홈페이지 및 입학처(☎ 055-320-3700~2)로 문의하십시오.

복수지원 관련 사항

- 수시모집 지원횟수는 원서접수의 “건수” 를 기준으로 최대 6회로 제한되며, 수험생들은 이를 유의하여 지원하여야 합니다.
- ‘6회 제한’ 에는 정원 외 전형(재외국민 특별전형 등)을 포함한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을 의미합니다.
- 지원횟수는 지원한 대학의 수와 관계없이 수시모집에서 지원한 모든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 · 전문대학 제외)의 전형을 대상으로 하며, 1개의 대학에 복수 지원한 경우 각각을 지원한 것으로 산정합니다.
- 수험생이 6회를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지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원서 접수 시간 순서상 6회 이후에 접수된 원서는 모두 접수 취소 처리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학무효 처리됩니다.(타 대학에 지원한 횟수를 모두 포함하며, 산업대학 · 전문대학에 지원한 경우는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복수지원 금지사항】

1.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의 합격자(최초 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2. 정시모집에 있어서 모집 기간 군이 같은 대학(교육대학 포함)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모집 기간 군이 같은 모집단위(일반전형과 특별전형간 포함)간 복수지원을 금지합니다.
3. 전문대학 · 산업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 · 산업대학 ·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 ·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 · 산업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4. 정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최초 등록 및 미등록 충원과정 중의 추가등록을 포함)한 자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나 단, 추가모집 기간 전에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한 자에 한하여 추가모집 지원 가능합니다.
(산업대학, 전문대학 합격자는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하지 않아도 추가모집 지원가능)
5.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 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 육해공군 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등)

이중등록 금지

1. 수시모집 합격자(등록 후 환불자 및 추가합격자 포함)는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본 대학교 및 타 대학교(전문대학 및 산업대학 포함) 정시모집,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2. 수시모집 등록금을 2개 이상의 대학에 납부한 경우(등록예치금 포함), 수시모집 등록예치금 납부기간 내에 포기하지 않으면 이중등록 위반으로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되고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3. 본 대학교 수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한 자가 다른 대학의 수시모집에 충원 합격하여 본 대학교에 입학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해당 대학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하며, 미등록 충원 마감일까지 입학포기 및 환불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4.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본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라도 지원방법상 금지조항(복수지원, 이중등록, 허위나 부정 등)을 위반한 자로 판명될 경우 즉시 입학이 취소(퇴교)됩니다.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의 반환기준에 준하여 반환합니다. 또한 본교 및 타 대학에서 지원방법상 금지조항으로 입학이 취소된 자의 경우 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본교에 입학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1. 대학 입학전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수험생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합니다.
 - 가. 수험생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e-mail, 학교생활기록부자료(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연도, 환불 계좌 등
 - 나. 보호자 정보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 다. 학교 정보 : 재학/출신 고교명, 고교 전화번호, 주소, e-mail, 팩스번호 등
2. 수집된 개인정보는 대학의 입학, 장학, 학사, 통계업무 및 대학에서 제공하는 기타 안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및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본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서명하여 제출바랍니다. 인터넷 접수 후 부여받은 수험번호를 기입하고, 해당 지원유형에 체크(V)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명	학교소재지		수학기간				국내학교에 해당하는 학년, 학기에 ●표시(한학기를 완전히 끝내지 못했을 경우 ▲표시)																										
	국가명	도시명	기간			재학년수	학년 학기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																						
			총 재학기간				년	개월	외국학교 재학기간					년	개월	국내학교 재학기간					년	개월											
교포학생 기재란		영주국 () 영주권번호 및 취득일(, 년 월 일)																															

2. 특이사항(조기졸업, 월반, 학기 성적기록 누락, 휴학, 외국 학기차이 등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만 아래의 표에 기재)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틀림 없음을 확인함

2020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부모(보호자) 외국 체류기간 기록표

■ 부모(보호자) 외국 체류기간 기재(학생의 외국학교 재학기간에 부모가 외국에서 체류한 기간을 기재)

구 분	소재지		외국 거주기간			보호자의 외국 체류기간과 학생의 재학기간이 일치하는 학기에 ●표시 (한 학기를 완전히 끝내지 못했을 경우 ▲표시)																								
	국가명	도시명	기간		재학년수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부(父)성명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																								
교포 기재란	영주국 ()		영주권번호 및 취득일 (, 년 월 일)																											
모(母)성명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																								
교포 기재란	영주국 ()		영주권번호 및 취득일 (, 년 월 일)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틀림 없음을 확인함

자기소개 및 수학계획서 (1/2)			
		수험번호 (※인터넷 접수 후 부여받은 수험번호 기입)	
지원 모집단위	학부, 학과		
성명	한글 :		
	영문 :		
출신 고등학교 및 졸업년도	년 월 일 고등학교(졸업예정 · 졸업)		
최종 해외 수학국	국가 :		도시 :
주요 자격증	1.	2.	3.
주요 수상실적	1.	2.	3.
취미		특기	
[자기소개 및 수학계획]			
SAMPLE 온라인 입력			

- 위 내용이 허위일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 관련 서류는 A4 규격에 맞추어 정리하되, 철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십시오.
- 자격증 및 수상실적이 3개 항목을 초과할 경우 중요 순으로 입력하십시오.
- 온라인 입력만 가능하며 여백을 포함하여 2,500자 이내이며, 반드시 한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 및 수학계획서 (2/2)

SAMPLE
온라인 입력

년 월 일

지원자 _____ (인 또는 서명)

인 제 대 학 교 총 장 귀 하

- 위 내용이 허위일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 관련 서류는 A4 규격에 맞추어 정리하되, 철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십시오.
- 자격증 및 수상실적이 3개 항목을 초과할 경우 중요 순으로 입력하십시오.
- 온라인 입력만 가능하며 여백을 포함하여 2,500자 이내이며, 반드시 한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020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 학력조회 자료

전형유형		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NO	학교명	학제 및 학기제	학기시작일 및 종료일	
1		■ 해당국 학제(기입)	1학기	월 일 ~ 월 일
		초() 중() 고()	2학기	
		■ 해당학교 학기제	3학기	
		□ 2학기 □ 3학기 □ 4학기	4학기	
2		■ 해당국 학제(기입)	1학기	월 일 ~ 월 일
		초() 중() 고()	2학기	
		■ 해당학교 학기제	3학기	
		□ 2학기 □ 3학기 □ 4학기	4학기	
3		■ 해당국 학제(기입)	1학기	월 일 ~ 월 일
		초() 중() 고()	2학기	
		■ 해당학교 학기제	3학기	
		□ 2학기 □ 3학기 □ 4학기	4학기	
4		■ 해당국 학제(기입)	1학기	월 일 ~ 월 일
		초() 중() 고()	2학기	
		■ 해당학교 학기제	3학기	
		□ 2학기 □ 3학기 □ 4학기	4학기	
5		■ 해당국 학제(기입)	1학기	월 일 ~ 월 일
		초() 중() 고()	2학기	
		■ 해당학교 학기제	3학기	
		□ 2학기 □ 3학기 □ 4학기	4학기	

※ 작성요령

1. 컴퓨터로 작성한 후 출력하여 제출하세요.
2. 학교는 해외소재 초·중·고교만 기재하고 반드시 공식 명칭을 기입해야 합니다.
3. 해당국 학제는 외국학교 초, 중, 고 학제를 기입하세요. 예) 한국의 경우 초(6) - 중(3) - 고(3)
4. 해당학교 학기제는 재학한 외국학교의 학기제에 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5. 3학기, 4학기의 경우 3학기제 혹은 4학기제 학교의 경우에만 기입하면 됩니다.(2학기제 학교의 경우 3, 4학기 란은 기재하지 않음)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서식5] 학력조회동의서

* 해외 소재 초·중·고교만 기재하고 반드시 학교 공식명칭을 기입하세요.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는 국가번호 및 지역번호를 반드시 표기하여야합니다. (해당학교별로 각각 작성)



LETTER OF CONSENT (학력조회동의서)
INJE UNIVERSITY

Office of Admission
197 Inje-ro, Gimhae, Gyeongnam, Korea. 50834

Tel: +82-55-320-3700
Fax: +82-55-334-0713
desmile@inje.ac.kr
<http://iphak.inje.ac.kr>

To whom it may concern:

*해외학교공식명칭

This letter is to confirm that I attended (_____).

I have applied to Inje University in Gimhae Gyeongnam, Korea and for the 2020 academic year have agreed to allow Inje University to officially request my academic records from previously attended schools.

In this regard, I would like to request your full assistance when they contact you regarding verification of enrollment and transcripts.

Student Name	
Date of Birth(mm/dd/yyyy)	
Sex(Male or Female)	
Student ID Number	
School Name	
Date of Admission(mm/dd/yyyy) [or transfer from another school]	
Date of Graduation(mm/dd/yyyy) [Date of Withdraw]	
School Phone No.	
School Fax No.	
School E-mail Address [해외학교 학력조회담당자]	
School Address [해당국의 전체주소표기/국가명, Zip Code포함]	
School Homepage	

Date(mm/dd/yyyy): ____ / ____ / ____

Sincerely yours,

Signature : _____

제3국 수학 사유서

2020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성 명		수험번호		모집단위	
제3국 수학	학생 재학 국가		보호자 근무국가		
	제3국 수학기간	년 월 일(학년 학기) ~ 년 월 일(학년 학기)			
세 부 사 항					
※ 중 · 고교 기간 중에 보호자의 근무국가와 다른 국가에서 수학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세요.					
위 기재 사유는 틀림이 없으며, 허위 기재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성명) 인					

- 사유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해당학교(기관)에서 발급한 공식서류
- 증빙자료 미제출시 사유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제대학교
INJE UNIVERSITY

김해캠퍼스 : 50834 경남 김해시 인제로 197 ☎(055)334-7111~8
부산캠퍼스 : 4739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로 75(부산백병원 내) ☎(051)890~6625
Homepage : <http://www.inje.ac.kr>
입학상담 : T.(055) 320-3700~2 F.(055)334-0713 <http://iphak.inje.ac.kr>